

자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고

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자은동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일부 개정된 「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시행일 : 2024. 6. 18.
2. 개정이유 : 재무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와 직위의 명확한 근거
3. 개정내용 : 제14조(임원 및 임기), 제15조(사무장), 제17조(임무), 제19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, 제28조(회계 및 지출) 관련 사항
4. 부 칙 :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5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임원 및 임기)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치회장 1명 2. 부회장 1명 3. 감사 2명 (단,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.) 4. 사무장 1명 5.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<p>② 자치회장은 전직 회장중에서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문위원은 2명 이내로 둔다. <신설 2023. 2.16.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때에는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치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임원 및 임기)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,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치회장 1명 2. 부회장 1명 3. 감사 2명 (단,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.) 4. 사무장 및 회계담당자(재무) 각 1명 5.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<p>② 자치회장은 전직 회장중에서 자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문위원은 2명 이내로 둔다. <신설 2023. 2.16.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때에는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치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.</p>
<p>제15조(사무장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사무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무장의 실비 및 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</p>	<p>제15조(사무장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사무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무장 및 회계담당자(재무)의 실비 및 수당</p>

<p>유무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승인한다.</p> <p>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과 사무장을 지명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사무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⑤ 사무장은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, 기록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위원과 공유한다. [별지 제8호]</p>	<p>의 지급 범위와 지급 유무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승인한다.</p> <p>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과 사무장을 지명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사무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⑤ 사무장은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, 기록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위원과 공유한다. [별지 제8호]</p>
<p>제17조(임무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소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주민자치회의 사무장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과 자치회장 및 기획·예산 분과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하고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한다.</p> <p>⑤ 기획·예산분과위원장 또는 사무장은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.</p> <p>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·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및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정기감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[별지 제6호]</p> <p>⑥ <신설></p> <p>⑦ <신설></p> <p>⑧ 위원은 운영세칙 제6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.</p>	<p>제17조(임무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소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주민자치회의 사무장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 보고 및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.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한다.</p> <p>⑤ 기획·예산분과위원장 또는 사무장은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.</p> <p>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·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및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정기감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[별지 제6호]</p> <p>⑥ <u>회계담당자(재무)는 기획·예산분과위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으며, 예산 및 회계업무 전반을 관리한다.</u></p> <p>⑦ <u>각 분과위원회 사무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 한다.</u></p> <p>⑧ 위원은 운영세칙 제6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.</p>
<p>제19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장·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기획·예산 분과위원회</p> <p>가. 기획·예산 분과 활동계획 수립·시행</p> <p>나. 주민자치회 운영, 연간사업 기획·홍보</p>	<p>제19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장·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기획·예산 분과위원회</p> <p>가. 기획·예산 분과 활동계획 수립·시행</p> <p>나. 주민자치회 운영, 연간사업 기획·홍보</p>

<p>다.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라.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획·추진 마. 주민자치회의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바. <신설></p>	<p>다.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라.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획·추진 마. 주민자치회의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<u>바. 원활한 재정관리를 위해 회계담당자(재무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8조(회계 및 지출)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획·예산 분과위원장 또는 사무장이 관리하되,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·지출 내역을 보고한다.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행위를 위해 동장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, 수입·지출 행위 시 동장의 협조를 득한다. [별지 제9호, 10호] ④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[별지 제10호] 서식에 의거 자치회장의 승인 및 동장의 협조를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. ⑤ 회계담당자는 정기회의시 [별지 제11호] 서식에 의거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8조(회계 및 지출)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획·예산 분과위원장이 관리하되, <u>회계담당자(재무)에게</u>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·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.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행위를 위해 동장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, 수입·지출 행위 시 동장의 협조를 득한다. [별지 제9호, 10호] ④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[별지 제10호] 서식에 의거 자치회장의 승인 및 동장의 협조를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. ⑤ <u>회계담당자(재무)</u>는 정기회의시 [별지 제11호] 서식에 의거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

2024. 7. 2.

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주민자치회장

